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 2009. 2. 23.    □ 개정 : 2019. 6. 18.
- 개정 : 2017. 12. 28.   □ 개정 : 2019. 11. 29.
- 개정 : 2018. 8. 31.    □ 개정 : 2020.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과 수원과학대학교 학칙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평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평의위원회에서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교원 - 3명
  2. 직원 - 3명 (단, 조교 1명 포함)
  3. 학생 - 2명
  4. 동문 - 2명
  5. 정책전문가 - 1명
- ② (위촉)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직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는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 ④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는 총동문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 ⑤ 정책전문가로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촉한다.
- ⑥ <삭제 : 2019.11.29.>
- ⑦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정지)** 평의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교수 및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1. 휴직 및 퇴직
- 2. 직위해제
- 3. 징계처분(감봉 이상)
- 4.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② 학생 평의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 1. 휴학 및 졸업
- 2.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
-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제6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7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접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개최 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함께 교내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공고를 하고, 회의 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09.01.>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간사)** 평의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 1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게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09.01.>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의장은 평의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 학생,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위원

4-2-9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위원 중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평의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후보자는 법인 정관 제25조 및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